#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1598

발의연월일: 2021. 7. 20.

발 의 자:소병훈·고영인·김승남

김승원 · 서영교 · 송재호

신정훈 · 안규백 · 양정숙

윤관석 • 윤준병 • 이성만

인재근 · 홍정민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 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지방공사의 경우 지방세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국민주거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항).

####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 토지주택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 사"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사의 공공임대용 주택 매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매입하 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6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
<u>다)</u>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	다)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	설립된 지방공사
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경	<u>2023년 12월 31일</u>
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